

노동조건에 관한 트러블로 인해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

일본국내에서 취업중인 외국인 여러분께



일본국내에서 취업중인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노동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안전위생법,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기준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외국인노동자 상담코너” (주요 도도부현 노동국 노동기준부 감독과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는 노동기준감독서에 상담해주시시오.

예를들어

-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다.
- 시간외 노동수당이 지불되지 않는다.
- 업무상의 부상으로 인한 휴업중에 해고되었다.
- 갑자기 해고되어, 해고예고수당이 지불되지 않았다.
- 노동재해를 당했으나, 의료비 및 휴업에 대한 보상이 없다.
- 노동계약 체결시에 임금 및 노동시간 등의 노동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
- 직장의 안전위생 확보가 불충분하여 노동재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 등등.

외국인노동자 상담코너에서는, 외국어로 노동조건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노동기준 관계법령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발췌)

(1) 노동기준법

다음과 같은 사항이 사용자에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① 균등 대우 (제 3 조)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신국의 노동조건 등이 일본과 비교하여 낮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② 노동조건 명시 (제 15 조)

노동계약 체결시에 노동자에 대한 임금, 노동시간 등의 노동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경우, 특히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을 교부하여 노동자에게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 노동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2) 취업장소 및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 3) 업무 시작 및 업무가 끝나는 시간, 소정의 노동시간을 초과한 노동의 유무, 휴식시간, 휴일, 휴가 및, 노동자를 2 팀 이상으로 나누어 취업시킬 경우의 취업시간 전환에 관한 사항, 4) 임금(퇴직수당 등은 제외)의 결정, 계산 및 지불 방법, 임금 계산 마감기일 및 지불시기에 관한 사항, 5) 퇴직에 관한 사항

③ 배상 예정에 대한 금지 (제 16 조)

노동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④ 해고에 대한 제한 (제 19 조)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을 위해 휴업하는 기간 및, 그 후 30 일간의 해고 및 산전산후의 휴업기간 및, 그 후 30 일간의 해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⑤ 해고에 대한 예고 (제 20 조, 제 21 조)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 일 이상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단, 이 예고 일수는 1 일당 평균임금을 지불하면, 그 일수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30 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⑥ 퇴직시의 증명 (제 22 조)

노동자가 퇴직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단, 노동자가 청구하지 않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1) 사용기간, 2) 업무의 종류, 3) 그 사업에 있어서의 지위, 4) 임금, 5) 퇴직 이유 (해고의 경우는 그 이유를 포함합니다.)

⑦ 임금의 지불과 금품의 반환 (제 23 조, 제 24 조)

임금은 1) 통화로, 2) 노동자에게 직접, 3) 전액을, 4) 매월 1 회 이상, 5) 일정기일을 정해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노동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미지불 임금 등을, 청구 후 7 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⑧ 노동시간과 시간외, 휴일 및 심야의 할증임금 (제 32~37 조)

노동자를 법정노동시간 (원칙적으로 1 주에 40 시간, 1 일에 8 시간) 을 초과하거나, 법정 휴일 (1 주에 1 일 또는 4 주에 4 일) 에 노동시키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수속이 필요합니다.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한 노동 또는 심야의 노동에 대해서는 평소의 노동시간 또는 노동일의 25%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할증 임금을, 법정 휴일의 노동에 대해서는 평소 노동시간 또는 노동일의 35%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할증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⑨ 연차유급휴가 (제 39 조)

6 개월간 계속 근무하고, 전체 노동일의 8 할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⑩ 제재규정에 대한 제한 (제 91 조)

취업규칙에 있어서, 노동자에 대한 감봉제재를 정할 경우, 감봉은 1 회의 금액이 평균 임금 1 일분의 반을 초과하거나, 총액이 임금지불기의 임금 총액의 10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 최저임금법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액은 지역별, 산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3) 노동안전위생법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 ① 사업자는, 노동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적절한 작업방법의 지시 등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강구할 것.
- ② 사업자는, 노동자를 고용 또는 배치전환할 경우, 필요한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하고, 법령에서 정한 위험·유해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
- ③ 사업자는, 노동자 고용시에, 또는 법령 기간마다,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노동자의 건강진단을 할 것.
- ④ 사업자는, 위험물·유해물의 취급 등의 법령에서 정한 작업에는 자격을 지닌 노동자 이외를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 ⑤ 노동자는, 사업자가 강구한 이들 조치에 따르고,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4)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에 있어서, 업무상의 사유 또는 통근으로 인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①요양을 할 경우에는, 요양 (보상) 급부를, ②요양으로 인해 노동이 불가능하여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4 일째부터 휴업 (보상) 급부를, ③요양 개시후 1 년 6 개월이 지나도 부상 등이 회복되지 않고 그 병상이 일정한 장애 정도일 경우에는 상병 (보상) 연금을, ④상병 등이 회복된 후에도 그 장애가 일정한 장애 정도로 남을 경우에는 장애 (보상) 급부를, ⑤장애상태가 심하여, 항상 또는 수시로 개호를 받을 경우에는 개호(보상)급부를, ⑥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급부, 장례비(장례급부)를, 피재노동자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급부합니다.

외국인노동자 상담코너 설치장소에 대한 안내

외국인노동자상담코너는, 다음의 도도부현 노동국 노동기준부 감독과 또는 노동기준감독서에 설치되어 있으며, 외국어로 노동조건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개설일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연락처로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상담코너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노동기준감독서에서도 노동조건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으나, 가능한 한 통역을 해줄 분과 함께 찾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도부현	설치장소	우편번호	소재지	연락처
홋카이도	홋카이도노동국감독과	060-8566	札幌市北區北八條西 2-1-1 샷포로제 1 합동청사	011-709-2057
후쿠시마	후쿠시마노동국감독과	960-8021	福島市霞町 1-46 후쿠시마합동청사	024-536-4602
이바라키	이바라키노동국감독과	310-8511	水戸市北見町 1-11	029-224-6214
도치기	도치기노동국감독과	320-0845	宇都宮市明保野町 1-4 우쓰노미야제 2 지방합동청사	028-634-9115
군마	오타노동기준감독서	373-0817	太田市飯塚町 104-1	0276-45-9920
사이타마	사이타마노동국감독과	336-8546	さいたま市岸町 5-8-13	048-822-4036
지바	지바토동국감독과	260-8612	千葉市中央區中央 4-11-1 지바제 2 지방합동청사	043-221-2304
도쿄	도쿄노동국감독과	112-8571	文京區後樂 1-7-22	03-3814-5311
가나가와	가나가와노동국감독과	231-8434	横浜市中區北仲通 5 丁目 57 番地 요코하마제 2 합동청사	045-211-7351
니가타	니가타노동국감독과	951-8588	新潟市千岸町 1-56	025-234-5922
도야마	다카오카노동기준감독서	933-0062	高岡市江尻字村中 1193	0766-23-6446
후쿠이	후쿠이노동국감독과	910-0019	福井市春山 1-1-54 후쿠이하루야마합동청사	0776-22-2652
아마나시	고후노동기준감독서	400-8579	甲府市下飯田 2-5-51	055-224-5611
나가노	나가노노동국감독과	380-0846	長野市旭町 1108 나가노제 1 합동청사	026-234-5121
기후	기후노동국감독과	500-8723	岐阜市金龍町 5-13 기후합동청사	058-245-8102
	다지미노동기준감독서	507-0037	多治見市音羽町 5-39-1	0572-22-6381
시즈오카	시즈오카노동국감독과	420-8639	静岡市追手町 9-50 시즈오카지방합동청사	054-254-6352
	하마마츠노동기준감독서	432-8555	浜松市元魚町 146	053-456-8147
	이와타노동기준감독서	438-8585	磐田市見附町 3599-6	0538-32-2205
아이치	아이치노동국감독과	460-8507	名古屋市中區三の丸 2-5-1 나고야합동청사제 2 호관	052-972-0253
	도요하시노동기준감독서	440-8506	豊橋市大國町 111 도요하시지방합동청사	0532-54-1191
미에	미에노동국감독과	514-8524	津市島崎町 327 番 2 津제 2 지방합동청사	059-226-2106
시가	요카이치시노동기준감독서	527-8554	八日市市緑町 8-14	0748-22-0394
교토	교토노동국감독과	600-8007	京都市下京區四條通東洞院東入ル立賣西町 60 日本生命四條빌딩 5 층	075-241-3214
오사카	오사카노동국감독과	540-8527	大阪市中央區大手前 4-1-67 오사카합동청사제 2 호관	06-6949-6490
효고	효고노동국감독과	650-0044	神戸市中央區東川崎町 1 丁目 1-3 고베크리스탈타워 16 층	078-367-9151
오카야마	오카야마노동국감독과	700-8611	岡山市下石井 1-4-1 오카야마제 2 합동청사	086-225-2015
히로시마	히로시마노동국감독과	730-8538	廣島市中區上八丁堀 6-30 히로시마합동청사제 2 호관	082-221-9242
후쿠오카	후쿠오카노동국감독과	812-0013	福岡市博多區博多驛東 2-11-1 후쿠오카합동청사 8 층	092-411-4862

후 생 노 동 성
도 도 부 현 노 동 성
노 동 기 준 감 동 국
서